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2일, 김형동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3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2.4.) 상정, 축조심
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형동의원)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47조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업자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조문을 제47조(과태료 등)¹⁾에서 제6조의3(이행강제금)으로 보완·이동하여,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안 제47조제2항 삭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3(이행강제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7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47조(과태료 등) ① (생략) ② 제6조제5항(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마다 1억원의 범위에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u>「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제47조(과태료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현행법은 제47조(과태료 등) 제1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과태료를, 제2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업자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해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행정기본법」 제3장 행정작용(제14조부터 제37조까지)에서는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3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 부과 금액, 계고·통지·징수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이행강제금의 연간 부과 횟수를 구체화(매년 1회 1억원의 범위)하고,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